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21호 2001. 7. 14)

총 무 위 원 회
2001. 7. 21

1. 심사경과

- 가. 2001. 7. 14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7. 14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7. 20 사천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과장 김영태)

가. 제안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

나. 주요골자

- 가. 전염병예방법의 병명개정으로 음성나환자를 음성한센환자로 개정(안 제4조)
- 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 확대(60㎡ → 85㎡)(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 이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관련법 개정으로 병명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이나 시행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